

【 주간 포커스 】

EU의 옴니버스 2와 Solvency II

장동식 수석연구원

유럽위원회는 2011년 1월 EU 보험감독체계와 Solvency II를 일치시키기 위해 옴니버스 2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Solvency II의 이행 시기가 2013년 1월 1일로 늦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계상 등에 대한 최대 경과기간이 부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Solvency II 체제 전환이 용이해지고, 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등 Solvency II 이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위원회는 2011년 1월 EU 금융감독체계와 Solvency II가 일치되도록 옴니버스 2(The Omnibus II Directive)를 공표하였음.

- 옴니버스는 2010년 9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관련 지침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지침임.
 - 옴니버스 지침은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11개 지침¹⁾의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보험부문의 Solvency II 지침에 대한 개정은 다루고 있지 않음.
- 옴니버스 2는 옴니버스 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Solvency II를 EU 금융감독체계와 일치되도록 설계됨.
 - 2011년 1월부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EU 보험감독기구(EIOPA)를 Solvency II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EU 회원국의 Solvency II 지침 이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 경과기간을 최대 경과기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1) 11개 지침은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2006/48/EC 및 2006/49/EC),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2002/87/EC),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s Directive(2003/41/EC), Market Abuse Directive(2003/6/EC),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2004/39/EC), Prospectus Directive(2003/71/EC),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1998/26/EC), Transparency Directive (2004/109/EC), Anti Money-Laundering Directive(2005/60/EC) 및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2009/65/EC)임.

□ 옴니버스 2와 관련된 EU의 보험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EU 금융감독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국가 감독체계에서 감독연합체계로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EU 시스템리스크이사회(ESRC: European System Risk Council) 및 EU 감독기구(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가 신설됨.
 - ESRC는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거시건전성 리스크 확인 및 리스크 공표,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따른 대응 조치 권고와 조언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 신설된 유럽감독기구는 EU 은행감독기구(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EU 보험감독기구(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 EU 증권감독기구(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 등임.
- EIOPA는 다른 감독기구처럼 EU 차원에서²⁾ 규정 및 일반적 감독관행의 일치, 미시건전성 정보 수집, 위기 시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기존 레벨 3 위원회인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가 수행하던 감독 기능을 그대로 유지

□ 옴니버스 2는 Solvency II 지침에 신설된 EIOPA의 기능을 반영한 것임.

- EIOPA는 CEIOPS의 기능을 흡수하고, 이와 더불어 EU 회원국 감독자 간 의견을 조화시키는 기능도 함께 수행함.
-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 내 감독자들이 Solvency II의 특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EIOPA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Solvency II와 새로운 EU 감독체계를 일치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옴니버스 2는 EU 각국의 Solvency II 지침 이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변경

- 현행 Solvency II 지침에서는 EU 각국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Solvency II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옴니버스 2는 EU 각국이 2013년 1월 1일부터 Solvency II 지침을 이행하도록 이행시기를 늦추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2000년 보험회사 감독을 위한 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s, CoCos)가 창설되는 등 개별 국가의 감독을 대신할 감독연합 형성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소형 보험회사 및 금융복합그룹 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에 한계를 노출함.

<표 1> 옴니버스 2의 최대 경과기간 설정 현황

항목	최대 경과기간	비고(Solvency II 관련 조항)
지배구조 요건	3년	Article 41(1), (3)
SFCR 제출	3년	Article 51(1)
감독보고	5년	Article 35(5)
자산·부채 평가	10년	Article 75(1)
책임준비금 계상	10년	Article 76(2), (3), (5)
SCR 계상	10년	Article 100, 101(3), 102, 104
자기자본 분류	10년	Article 94
자본확충	10년	Article 37(1), (2)
그룹감독	10년	Article 218(2), (3)

자료 : Milliman(2011), "European Commission Issues Omnibus II Directive and EIOPA Sets Out Revised Timetable"

□ 옴니버스 2는 자산·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계상 등에 대한 최대 경과기간을 부여

- 옴니버스 2는 보험회사가 Solvency II 체제로 쉽게 전환하고, 시장 혼란을 억제 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 경과기간(예, 3년, 5년 및 10년)을 부여하고 있음.
- EU 회원국의 보험감독당국은 이 지침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지배구조 요건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경과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EU 각국은 Solvency II가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KiRi